

##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

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
2.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
3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
4.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·영양교육 및 지도·관리에 필요한 비용
5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제4조(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의 보조) 국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.

1.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
2.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
3.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

4. 그 밖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제5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평가(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제외한다)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